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4
----------	------

제출연월일: 2021. 05. 0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하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산정금액을 가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하수법」 제14조

- 이행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는 개선의견 반영

[여성가족과-8976호(2021. 3. 4.)]

라. 입법예고: 2021. 3. 2. ~ 3. 23.(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바.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수질 측정시설”로”를 “수질측정망”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하수 관측망”으로”를 “지하수관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구의 회”를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구”를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건설과장이 되고”를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로,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호 중 “조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을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로, 같은 조 제6호 중 “설치·운영 및 지하수이용 실태 조사”를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16조의 제목 “(사무취급의 예)”을 “(사무취급 준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u>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u> <u>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 공사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p>제4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①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u> <u>②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u>
<p>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질규칙 제9조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u> <u>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u> <u>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u> 	<p>제5조(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수질측정망”으로 -----</u> <u>2. ----- 지하수관측시설”로 -----</u>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② -----

-----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1. -----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 2. ----- 중구(이하 “구”라 한다) -----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

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삭 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

----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출) (생략)

-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 2. ~ 5. (생략)
-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 7. ~ 8. (생략)

<신 설>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6조(사무취급 예)

하고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삭 제>

제15조(세출) (현행과 같음)

- 1. -----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 2. ~ 5. (현행과 같음)
- 6. -----
- 7. ~ 8. (현행과 같음)

9.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10. -----

제16조(사무취급 준용)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7.>[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 <2001. 12. 1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5.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4. 7.>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7.7.31.>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개정 2017.7.31.>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2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가감 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작성자

- 소 속: 건설과
- 직 급: 지방환경주사보
- 이 름: 조상혁
- 연락처: 052-290-3843

타 지자체 지하수 조례 개정 현황

지자체명	제·개정일자	산정기준	비고
울산 북구	2017.06.29.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	
울산 울주군	2020.12.31.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	
부산 중구	2020.12.10.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	
부산 사상구	2020.09.29.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	
부산 강서구	2020.10.12.	산정금액이 1백만원 이하 10/100 감경 산정금액이 1백만원 초과 15/100 감경	
부산 기장군	2017.09.29.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	
대전 중구	2020.12.28.	굴착지름 50mm이하, 150mm이상 10/100 가중 굴착지름 50mm초과, 150mm미만 10/100 경감	
대전 서구	2020.10.19.	굴착지름 50mm이하, 200mm이상 10/100 가중 굴착지름 50mm초과, 200mm미만 10/100 경감	